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그리고 공동
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영화 제작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국의 영화산업이 영화 작품의 공동제작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고려
하고,

양국 간에 공동제작된 영화 작품의 진흥이 이탈리아공화국(이하 "이탈리아"라
한다)과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영화 제작 및 배급 부문의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영화 협력이 양국 간의 문화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2005년 10월 21일 로마에서 체결된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문화협력협정"이라 한다)과 특히 협정의 제8
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공동제작물"이란 장르(극영화,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 영화
를 포함한다)를 불문하고 길이에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한국 공동제작
자와 하나 이상의 이탈리아 공동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되고, 매체에 관
계없이 주로 영화관에서 상영된 후 텔레비전 및 인터넷(장래의 보급
및 배급 형식을 포함한다)을 통해 상영되며,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하여 만들어진 영화를 말한다.

나. "공동제작자"란 각각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의
하여 정의된 한국 또는 이탈리아의 영화 제작자로서 공동제작물의 창
작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공동제작자"라는 용어는 다수의 한국 또는
이탈리아 영화 제작사를 지칭할 수 있다.

제2조

권한 있는 당국

1. 이 협정의 적용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이탈리아 당사자의 경우: 문화부 영화시청각총국

나. 한국 당사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

2.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다른 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그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그러한 변경을 사전에 통보한다.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그러한 모든 변경은 제19조제5항에 따른 이 협정의 개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3조

공동제작물 인정

1. 이 협정의 틀 안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준수하여 만들어진 각 공동제작물은 국내 작품으로 취급되며, 각 공동제작자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거나 제정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혜택은 이를 부여하는 국가의 공동제작자에게만 귀속된다.

2. 작품이 공동제작물로 인정받기 위하여, 공동제작자는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특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프로젝트가 이 협정의 규정과 각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3. 권한 있는 당국은 제출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내린 결정을 상호 통지한다. 원칙적으로, 다수 지분 공동제작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소수 지분 공동제작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먼저 의견을 전달한다.

4. 공동제작자는 공동제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기술 조직뿐만 아니라, 높은 평판과 적절한 전문적 자격의 존재를 서류로 입증한다.

5. 공동제작자가 공통의 경영이나 지배 구조로 연결된 프로젝트에는 공동제작물 인정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 대한 예외는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제4조

부속서

1. 제3조제2항에 언급된 공동제작물 인정을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에서 정의된 절차 규칙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으로 부속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부속서는 구술서 교환을 통한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그 개정은 회답 구술서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제5조

참여

1. 공동제작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는 작가, 각본가, 감독, 실연자 및 그 밖의 창작·기술·예술 인력, 그리고 그 밖의 종사자는 다음과 같다.

가. 이탈리아의 경우:

- 1) 이탈리아 국민,
- 2) 유럽경제지역 소속 국민, 또는
- 3) 시행 중인 법률에 따른 이탈리아 내 장기 거주 외국인

나. 한국의 경우:

- 1) 한국 국민,
- 2) 시행 중인 법률에 따른 한국 내 장기 거주 외국인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인 창작·기술·예술 인력, 그리고 그 밖의 종사자의 참여는, 공동제작물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다.

제6조

촬영

1. 스튜디오 촬영은 한국이나 이탈리아에 위치한 스튜디오 또는 다자간 공동 제작물의 경우 이 협정 제8조에 언급된 제3국 중 하나에서 수행된다. 이 규정에 대한 예외는 권한 있는 당국의 공동 승인이 있어야만 허용될 수 있다.

2. 공동제작물의 각본 또는 주제상 필요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자의 국가 외의 국가에서 스튜디오 촬영에 더하여 야외 또는 실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허가를 부여한다.

제7조

공동제작자의 기여

1. 각국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는 공동제작 총비용의 2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공동제작자의 기여는, 원칙적으로,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에 합당하게 비례하는 창작적·기술적·예술적 참여를 포함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는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가 공동제작 총비용의 1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일 것을 조건으로,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허용된다.

3. 한국 공동제작자 또는 이탈리아 공동제작자가 두 개 이상의 제작사로 구성된 경우, 각 회사의 재정적 기여는 공동제작 총비용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8조

다자간 공동제작물

1. 권한 있는 당국은 한국 및 이탈리아 공동제작자와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들이 영화 또는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제3국 공동제작자 간의 다자간 공동제작물의 제작을 공동으로 승인할 가능성을, 이 협정의 조건 및 그러한 제3국과의 협정 조건에 따라, 우호적으로 검토한다.

2. 다자간 공동제작물의 경우, 각국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는 모든 공동제작자의 총 재정적 기여의 1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국 공동제작자가 두 개 이상의 제작사로 구성된 경우, 각 회사의 재정적 기여는 공동제작 총비용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9조

마스터 및 언어

1. 각 공동제작자는 공동제작물의 원본 마스터를 비례적으로 소유하며, 복제물을 제작할 권리를 가진다. 원본 마스터는 한국 또는 이탈리아에 위치한 공동으로 결정된 시설에 공동명의로 기탁된다. 공동제작 계약에서 합의되지 않는 한, 지식재산권은 제외된다.

2. 각 공동제작물의 원본 마스터는 한국 또는 이탈리아에 위치한 시설에서 제작된다. 예외적인 경우 및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3국에 위치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빙 및 자막 작업은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한 참여하는 공동제작자의 국가에서 수행된다.

3. 각 공동제작물은 한국어 및 이탈리아어로 이용 가능하며, 이러한 언어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양국의 공용어로 된 자막을 포함한다. 각본상 필

요한 경우,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언어로 된 대사를 공동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이동 원활화

1. 당사자들 각각이 시행 중인 법령 및 이탈리아 당사자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 자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준수하며, 당사자들은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창작·기술·예술 인력이 공동제작물의 제작을 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하고 거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2.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 각각이 시행 중인 법령 및 이탈리아 당사자의 경우 시행 중인 유럽연합 법령에 따라, 공동제작물의 제작 및 상업화에 필요한 장비의 일시적 반입 및 반출을 용이하게 한다.

제11조

수출

공동제작물이 영화 작품 수입에 제한을 두는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해당 공동제작물은 다음 국가의 쿼터에 산입된다.

가. 다수 지분 공동제작자의 국가

나. 재정적 참여가 동일한 경우, 더 큰 수출 가능성을 제공하는 공동제작자의 국가

다. 이 조 가호 및 나호에 언급된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이 국민인 국가

제12조

영화제

1. 공동제작물은 원칙적으로 다수 지분 공동제작자에 의하여, 또는 공동제작자의 합의에 따라 국제 영화제에 출품된다.

2. 동일한 참여의 공동제작물은 감독이 국민인 당사자에 의하여 국제 영화제에 출품된다. 감독이 제3국 국민인 경우, 그 결정은 공동제작 계약서에 규정되며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승인된다.

제13조

수익

1. 공동제작자 간 시장 및 수익 배분을 규정하는 계약 조항은 각 공동제작자의 총기여(재정적·예술적·기술적)에 비례하여 작성되며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된다.

2. 앞서 언급한 배분은 원칙적으로 각 공동제작자의 총기여에 비례하며, 수익 또는 시장의 분할 또는 이 두 가지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제14조

크레딧

공동제작물의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 예고편, 간행물 및 그 밖의 모든 홍보 자료에는 그 작품이 한국-이탈리아 또는 이탈리아-한국 공동제작물임을 명시한다.

제15조

공동위원회

1. 문화협력협정 제19조에 언급된 공동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양국 공무원과, 필요한 경우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선정한 양국의 전문가(감독 및 제작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 회의는 주로 전자적 수단으로 개최되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히 이 협정의 이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영화 부문을 규율하는 어느 한 국가의 법령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개최된다.

3. 공동위원회는 공동제작자의 투자 총액과 기술적·예술적·재정적 참여를 검토하여 공동제작물에 전반적 균형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균형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공동위원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며, 이는 권한

있는 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제16조

적용 법률

이 협정은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이탈리아 당사자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 자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준수하며 이행된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다른 당사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며, 그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협정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18조

분쟁 해결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해석 및/또는 이행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그들 간의 직접적인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제작자 간의 모든 분쟁은 이 협정의 부속

서에 규정된 절차 규칙의 제2항다호제9목에 언급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러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분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9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지하는 두 건의 통보 중 두 번째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5년의 기간마다 추가로 자동 갱신된다.

3. 이 조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종료 예정일 최소 6개월 전까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은 이 협정 제3조제2항에 언급된 인정을 이미 획득한 공동제작물과 종료 시점에 이미 인정 신청서가 제출된 공동제작물에 대하여 계속 적용된다. 이 항의 규정은 완성된 공동제작물의 수익 배분에도 적용된다.

5.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 합의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앞의 내용은 제4조제2

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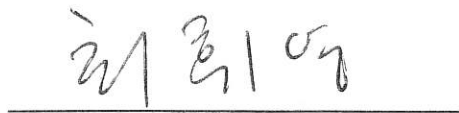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26년 9월 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이탈리아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다.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절차 규칙

1. 이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물 인정 신청서는 촬영 또는 애니메이션의 주요 작업 시작 전에, 가급적 동시에 공동제작자에 의하여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다.

2.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며,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어로, 한국의 경우 한국어로 작성된다.

가. 각본

나. 공동제작물의 제작 및 이용을 위한 저작권 소유권을 각국에서 법적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다.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공동제작자가 서명한 공동 제작 계약서. 이 계약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적어도 잠정적인, 공동제작될 작품의 제목

2) 작품 작가의 이름 또는 문학 작품을 각색한 경우에는 각본가의 이름 또는 문학적 원작에 기초한 경우 각색자의 이름

3) 감독의 이름(그/그녀의 교체를 규정할 대체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4) 상세 예산안

5)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액

6) 공동제작자가 각자의 재정적 기여에 비례하여 모든 지출

을 부담하거나 미지출액을 반환한다는 약속

7) 다음의 경우 공동제작자 간의 재정적 정산의 조건을 설정하는 조항

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전체 파일을 검토한 후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나) 권한 있는 당국이 공동제작물의 공개 상영을 어느 한 국가에서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다) 공동제작자가 공동제작 합의서에 합의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다수 지분 공동제작자가 "모든 제작 위험" 및 "원본 자료와 관련된 모든 제작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9)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공동제작자 간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절차를 설정하는 조항

10) 촬영 또는 애니메이션 주요 작업의 대략적인 시작 날짜

라. 상세 자금 조달 계획

마. 국적 및 배우들이 연기한 역할을 표기한 작가 및 예술·기술 인력 목록

바. 촬영 장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촬영 계획

사. 줄거리

아. 이미 체결된 경우에 한정하여, 배급 계약서

3.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자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완 서류 및 세부 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4. 공동제작이 끝나기 전,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
탁된 원래의 공동제작 계약에 대한 계약상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5. 공동제작자의 교체는 권한 있는 당국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락될 수 있다.

6. 양쪽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 인정 신청을 검토할 때, 그들의 결정이
각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 및 이 절차 규칙의 규정에 따라 내려지도록 보장한다.